

대 법 원
제 1 부
판 결

2014. 1. 16. 원본영수	인
20 . . . 판결송달	

사 건 2013다80924 기타(금전)

원고(재심원고), 상고인

임그루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A동 103호

피고(재심피고), 피상고인

케이티노동조합

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

대표자 정윤모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4. 선고 2013재나20007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

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





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.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4. 1. 16.

재판장	대법관	김창석	<u>김창석</u> 
	대법관	양창수	<u>양창수</u> 
주심	대법관	박병대	<u>박병대</u> 
	대법관	고영한	<u>고영한</u> 



정본입니다.

2014. 1. 18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진승범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